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5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정성국·서천호·이헌승

곽규택 · 김용태 · 김대식

조정훈 · 김예지 · 최형두

서지영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영유아보육법」과 「유아교육법」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, 어 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 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.

특히,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 자 함(안 제35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3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	②
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	
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	
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	
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<u>&lt;단서 신설&gt;</u>	다만,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
	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
	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
	<u>구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